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61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9.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31,000,000원의 한도 내에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C(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7. 21.자 1억 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2019. 6. 27.경 E 주식회사와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 앞으로, 2023. 8. 18.경 원고 앞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권양도에 따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양수받은 각 대출원리금 채권은 2023. 10. 31. 기준으로 원금 67,348,145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8,628,225원 합계 95,976,370원 상당이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1. D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2020. 6. 4.경 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대금 250,001,000원에 매각허가(낙찰)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20. 7. 9. J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에다가 피고 자신이 모아놓은 돈 및 피고의 형부 등 친인척과 주식회사 K로부터 빌린 돈을 합하여 2020. 7.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0. 8. 5. 피고가 납부한 대금을 가지고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종결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F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매각 대금 납부일인 2020. 7. 9. 또는 배당기일인 2020. 8. 5.에 채무자의 재산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채권 전부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았고 원고 주장의 증여계약도 알았는데도 그 때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는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 앞으로 양도를 한 F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20. 7. 9. 또는 2020. 8. 5.에 원고 주장의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대금으로 납부한 94,001,000원 상당의 돈은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피고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게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우선 3,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증여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